

우리나라 경찰위원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

이영우*, 장수연^o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o(사)치안정책제도연구원

e-mail: lawking77@kwu.ac.kr*, mikey86@naver.com^o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 Police Committee

- Focus on the National Police Committee -

Young-Woo Lee*, Su-Yeon Jang^o

*Dep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oKorea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 요 약 ●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경찰위원회(Police Committee), 경찰위원회제도(Police Committee System), 경찰법(The Police Law),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ty), 민주성(Democracy)

I. Introduction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경찰위원회의 설립에서 현재까지 심의·의결하는 권한만을 가지며 그 업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사무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기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과 개정안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Considerations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노력은 경찰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경찰법」의 제정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1].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경찰행정의 업무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들과 주요 치안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경찰활동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2].

III.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olice Committee

1. Problems with National Police Committee

첫째, 운영상의 한계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사실상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경찰위원회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3]. 둘째, 정치적 중립성의 저해이다. 위원의 임명방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한 임명방식은 사실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의 선임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가 차단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의도대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있다[4]. 셋째, 경찰위원회의 조직 구성은 「경찰법」 제5조 제2항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의 임명을 비상임으로 정하고 있으며, 비상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의 책임성이 저하되거나 불확실한 지위 등 문제가 발생한다.

2. Improvements for National Police Committee

첫째,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임명 제청권, 인사권 등 경찰 관련 법령 외 주요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위원회가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매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고 위원회에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5]. 둘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명방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제청권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통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정수행의 원활한 수행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6]. 셋째, 경찰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행정업무에 책임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경찰행정 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행정과 경찰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IV. Conclusions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에 단순 자문기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위원회로서 안전한 사회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1년 「경찰법」의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상 한계와 정치적 중립성 저해 등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재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Introduction of the Police Commission System*”, p.8, 2020.
- [2] Yeon-Gyeong Ryu,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e Committee in Korea", Kwangju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p.4, 2019.
- [3] Yun-Kyu Park, "Study on the Improvement Way of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Police Association*」 Vol. 10, No. 3, Korean Police Association, p.226, 2008.
- [4] Hak-Kwan Kim, "A Study on the Municipal Police Commission", Soongsil University Ph.D. thesis, p.171-172, 2020.
- [5] Ki-Soo Lee, "A Study on the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power after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on power - Focused on the Reform of the Police Commiss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Ombudsma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Police Association*」 Vol. 19, No. 1, Korean Police Association, p.139-141, 2020.
- [6] Won-Jung Kim, "A Study on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of maintenance of the Public Pea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of Korea*」 Vol. 21, No. 4, Korea Society for Public Management, p.196-197, 2007.